'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9일부터 시행

취재인력 최소 5명...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

전국적으로 등록된 인터넷 매체수가 6,000개가 넘는 가운데 일부 사이비 언론의 폐해를 막기 위한 장치로 정부가 추진해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현재까지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를 제출하면 등록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취재 및 편집인력 5명을 상시 고용하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또는 산재보험 중 한가지 이상의 가입서를 제출해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강화한 것은 선정적인 기사, 어뷰징, 기업에 광고·협찬 요구 등 언론사의 외양을 갖추고 사이비 행위를 일삼아온 유사언론사의 부작용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5,877개의 인터넷신문을 전수조사 한 결과 1년간 단 한건의 기사도 송고하지 않은 곳이 전체의 43.8%, 홈페이지조차 없는 경우도 전체의 2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총연합회와 광고주협회 등 광고 관련 단체와 학회는 지난달 13일 성명서를 내고 "인터넷신문사의 급증이 뉴스 어뷰징 등의 폐해로 이어져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의 정부 안보다 더 엄격한 10명 이상으로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부긴 하지만 포털을 숙주로 한 인터넷신문의 유사언론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침체된 광고시장을 다시 살리고 언론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며 그 내용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미 등록된 인터넷신문들도 새로운 요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문체부 노점환 미디어정책과장은 "용이한 등록제로 인해 매년 인터넷신문이 1,000개씩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고 선정성과 유사언론 문제 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AA

김다혜 기자 dahye@kaa.or.kr